

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

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. . .

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(1인)

찬 성 자 : 김민성·김영태·박세채·이명희
이정희·장미경·허민근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독사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.

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「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중복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「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며, 조례의 간소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실태조사 조항의 간소화(안 제5조)
- 나. 다른 조례의 폐지(부칙 안 제2조)
- 다. 경과조치(부칙 안 제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6조

나. 부서검토: 복지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

관계법령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

제6조(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2.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3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4.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5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
6.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복지정책과

조 례 명	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관련 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): 제2항 삭제○ 「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 폐지에 관한 사항 (안 부칙 제2조)○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(안 부칙 제3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5조제2항은 실태조사 시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삭제○ 「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 폐지 후 기존 사업의 공백 없이 연속적인 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 (안 부칙 제2조, 제3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: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해당 조례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노인 고독사 관련 중복된 조례를 폐지·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,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○ 소요예산: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(세출 증가분) 해당사항 없음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	